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0 조례 제2727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789-65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울진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입세대 지원
 2. 결혼·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본호신설, 2024. 12. 30.>
 3. 다자녀 가정 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4. 일·가정 양립 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5. 주민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 <본호신설, 2024. 12. 30.>
 6.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7.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본호신설, 2024. 12. 30.>
-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③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보육·교육 등의 수당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 지원
 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24. 12. 30.>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